

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충족 의무 안내

안녕하십니까? 용인시청입니다.

본 안내문은 개정 대부업법(25.7.22. 시행) 부칙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경과조치의 이행을 위해 발송하는 것입니다.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경과조치 종료일(27.7.22.) 이전까지 필히 요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.

<대상자>

- 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등록된 대부업자/대부중개업자
- 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자/대부중개업자

< 안내사항 >

1. 등록요건 경과조치의 종료시점 : **2027년 7월 22일**
2. 조치가 필요한 사항 : 경과조치 종료 전 개정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 구비

※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

1) 금전대부업자

- (지자체 등록) 개인 : 1억원 // 법인 : 3억원
- (금융위 등록) 법인 : 3억원 // 매입채권추심업 : 5억원

2) 대부중개업자

- (지자체/금융위 등록) 대부중개업자 : 3천만원
- (금융위 등록)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: 1억원

3. 개정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 구비 증빙 절차

1)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개정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

⇒ 2027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2027년 상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내의 자기자본 (개인의 경우 순자산액) 항목에 반영

2) 2027년 7월 1일~22일의 기간에 증자 등으로 개정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

⇒ 법인전부사향증명서, 자본금납입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개정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

4. 대부중개업은 영업소 기준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지만, 온라인으로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지자체 등록만으로는 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전산·인력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함.

※ 현재 온라인 중개사이트 운영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금융위원회 이관 필수

5.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-6193-22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2026년 4월 16일

용인시청